

제314회 임시회
2012. 9. 2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2012. 9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정지숙 의원 외 6명
- 나. 발의일자 : 2012년 8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9월 11일

(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정지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충북도립예술단에서 충북도립교향악단으로의 변경에 따른 교향악단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원의 변경(안제3조제3항) :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정원 변경
- 42명 이내 → 45명 이내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명칭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으로 바뀌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립교향악단의 정원을 교향악단 42명, 사무직원 3명에서 교향악단 45명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교향악단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”를 “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~ ② 생략 ③ <u>교향악단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